

제156회(정례회)
(폐회중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회의록

제5호(부록)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

목 차

1.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(종로구청장 제출)	1면
2.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(종로구청장 제출)	3면
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(종로구청장 제출)	9면
4. 도시환경정비(중학)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(종로구청장 제출)	11면

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

의안 | 1160 |
번호 |

제출년월일 : 2006. 1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건 명

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서울특별시공고 제2005-1677(2005. 12. 1)호로 『교남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(변경)승인 공고』 등에 따라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의 『교남뉴타운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』을 위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7(2005.2.5)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-노심부)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임.

3. 주요요지

가. 대상지

- 위 치 :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원
- 면 적 : 200,297.8㎡

나. 도시계획사항

- 일반주거지역(1,2,3종), 일부상업지역, 중심지마관·역사문화미관지구 등

다. 추진경위

- 2003. 7. 11 : 뉴타운지구 지정 신청
- 2003. 11. 18 : 뉴타운지구 지정 고시(서울시고시제2003-372호)
- 2005. 3. 10 : 교남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공고(서울시공고제2005-322호)
- 2005. 8. 12 : 교남뉴타운정비계획및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공람공고
- 2005. 12. 01 : 교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(변경)승인공고(서울시공고 제2005-1677)
- 2005. 12. 30 : 교남뉴타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
4. 입안내용

가.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-도심부)

1)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(교남뉴타운)

구 분	면 적 (㎡)	위 치
신 설	200,297.8	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대

2) 토지이용계획

구분	지역구분	대상지역	토지이용 유도방향	지 정 용 도
기정	도심 주거지역	교남동 일대	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유도	주거(공동주택), 교육연구/ 복지, 의료시설, 근린생활
변경	도심 주거지역	홍파동, 송월동 일대	도심부에 남아있는 주거기능을 유지 하면서 새로운 주거기능 도입유도	주거(공동주택), 교육연구/ 복지, 의료시설, 근린생활
	혼합 상업지역	적십자병원 뒤쪽 부지	다양한 상업활동의 유지, 강화	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되 는 용도로 하되, 주거용도 는 주용도에서 제외함

3) 용적률·건폐율, 높이 및 층수

구분	지역구분	건폐율	용적률*	건축물최고높이	비고
당초	주거지역	50%	250%	50m이하	-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사선을 배제, - 기준높이에서 20m 추가하여 지정
	상업지역	60%	600%	70m이하	
변경	주거지역	50%	250%이하	50m이하	-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경우 사선을 배제, - 기준높이에서 20m 추가하여 지정
	상업지역	60%	400~600%	70m이하	- 용도지역 일부조정

나. 입안사유 : 교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변경

라. 공고내용

- 1) 건 명 :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
- 2) 공람기간 : 2005. 12.30~ 2006. 1.13
- 3) 게재방법 : 구보 및 종로구청페이지
- 4) 공람장소 : 종로구청(균형발전추진단)
- 5) 공람공고 의견 : 의견없음.